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가합5317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4. 6. 13.(피고 1., 2.에 대하여)

2014. 7. 11.(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4. 11.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6,510,766원 및 그 중 285,993,594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2013. 8.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63,664,891원 및 그 중 163,147,791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10 토지 중 28/241 지분, 같은 목록 13 토지 중 13/942 지분(각 토지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2013. 3. 22.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120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D'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2005. 7. 22. 보증원금을 1억 6,000만원, 보증기한을 2013. 7. 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①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3. 1. 23. 보증원금을 1억 2,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1. 23.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②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보증약정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2. 11. 30.까지는 연 16%,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확정손해금,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②보증약정에 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위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5. 8. 5. 2억 원, 2013. 1. 23. 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같은 해 2. 27.부터 이자를 연체하다 같은 해 5.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3. 6. 25. 우리은행에 286,213,644원(①보증약정 163,147,791원 +

②보증약정 123,065,85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비용으로 517,1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회수한 ② 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중 220,05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72원이다.

다. 피고 C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피고 C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기계부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이천시 E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2011. 4. 26. F, G으로부터 별지 목록 10, 13 토지 및 H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같은 날 I, J으로부터 별지 목록 5, 11, 12, 14, 15 토지 및 K, L, M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1. 6. 3. 위 1)항 기재 계획 아래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과 별지목록 번호 5, 7, 8, 11, 14, 17 토지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A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토지에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 2011. 6. 20. 피고 A가 운영하던 N과 사이에 용역비 6억 원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N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피고 C은 N로부터 별지 목록 15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기로 하고 2012. 6. 12.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그러나 피고 A가 위 용역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C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 A가 2013. 2. 16. 갑자기 위 용역업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3. 3.경 피고 A에게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A가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지분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토지의 피고 A 지분 전부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22. 별지 5, 7, 8, 10, 11, 13, 14, 15, 17 각 토지의 피고 A 지분(별지 목록 10, 13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지분이 포함되어 각각 63/241 지분과 29/942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나머지 토지(별지 1, 2, 3, 4, 6, 9, 12, 16)의 피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6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토지의 경매

피고 A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이 2012. 7.경 별지 목록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던 부분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지분은 모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피고 C에게 배당된 것은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시에 피고 C의 가등기가 경료된 별지 토지 전체에 대해 그 매매예약의 취소와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만 매매예약의 취소와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286,510,766원(①, ②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잔액 285,993,594원 + 확정지연손해금 72원 + 법적절차비용 517,100원) 및 그 중 285,993,594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3. 8.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63,664,891원(①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63,147,791원 + 법적절차비용 517,100원) 및 그 중 163,147,791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3. 8.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보증약정 제6조의 사유(임의경매신청 등)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채권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미 성립한 것이거나,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된 때인 2012. 7.경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A는 2013. 3. 2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로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는 2011. 6. 3.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임의경매가 신청된 2012. 7.경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013. 3. 22.자 매매예약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이고, 보증계약의 체결만으로 사전구상금권이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 후에 성립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2011. 6.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나, 별지 목록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된 것은 2012. 7.경이고, 피고 A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2013. 2.경으로 매매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피고 A의 사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 A가 피고 C에게 2013. 3. 22. 가등기를 경료한 것 자체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7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 피고 C이 피고 A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을 사해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용주

판사김나나

판사성준규

별지